

그레이 존 해소제도란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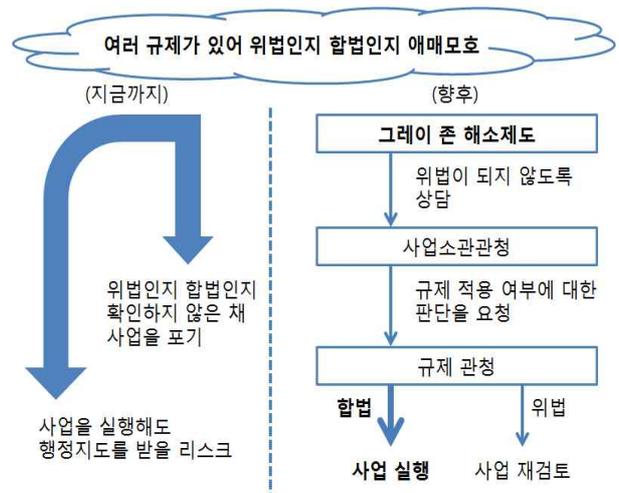
- 아베노믹스 성장전략의 핵심인 산업경쟁력강화법에서 규제 적용 범위를 사전에 판단하여 알려주는 ‘그레이 존 해소제도’의 활용이 본격화
- 동 제도는 기업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경제산업성, 후생노동성 등 사업과 관련 있는 부처들이 규제 적용 여부에 대해 해석하여 알려주는 제도로써 차세대자동차, 건강지도 등의 첫 번째 사례로 인정

□ 애매모호한 규제 적용 범위의 명확화

- ‘14.1.20 시행된 산업경쟁력강화법에서 일본기업의 활동을 제한해 온 규제를 완화시키는 ‘그레이 존 해소제도’를 도입

- 신규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규제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기업의 투자 활동을 촉진
- 규제 적용 여부를 확인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1개월로, 절차도 대폭 간소화되어 제도를 이용하려는 기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

* 법안 시행 1주일 만에 중소기업을 포함한 10개 기업에서 6건 신청



- 동 제도에서 사업 내용이 위법으로 판단될 경우, 다음 단계로 ‘기업실증특례제도’를 활용할 수 있음
 - 기업이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면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고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특례로 인정
 - 사업 추진을 통해 안전이 실증되면 규제를 완화하는 환경을 정비할 수 있게 됨

□ 그레이 존 해소제도 도입 배경

- 기업의 이노베이션 활동은 기존에 없는 새로운 사업인 경우가 많은데, 이 때 사업이 규제의 범위 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투명한 ‘그레이 존(gray zone,)’이 신규사업을 추진하는데 애로 요인으로 작용
 - 예를 들면 의료보험회사가 환자의 진료명세서를 기업에 제공하고 분석결과를 질병 예방에 활용하는 사업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는지 여부가 애매모호
- 향후 성장이 예상되는 의료·간병 분야에서는 ‘그레이 존’이 많은 만큼 새로운 사업 기회도 많지만 규제가 적용되는 것을 우려하여 사업 추진에 소극적인 기업이 많음
 - 1976년 택배사업을 시작한 야마토운수는 편지나 다이렉트 메일에 관한 우편법의 해석을 둘러싸고 때로는 일본정부와 싸우면서 새로운 사업을 개척해 왔지만 이런 기업의 사례는 많지 않음

□ 합법으로 인정된 사례들

- ‘14.2월초 일본정부는 ‘그레이 존 해소제도’에 의한 첫 번째 합법으로 인정한 사례를 제시
 - ① 자동차의 자동정지 장치 (닛산자동차)
 - 확인 내용 : 운전자가 심장마비 등으로 긴급 상황 시 컴퓨터 제어로 자동차를 멈추게 하는 자동정지 장치를 개발하는 데, 이 장치를 부착한 자동차가 차량검사를 통과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제 여부
 - 인정 내용 : 차량검사의 기준에 맞고 검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상품을 개발하는 것은 문제없음
 - ② 헬스장에서의 건강지도 (코나미스포츠&라이프)
 - 확인 내용 : 생활습관병을 방지하기 위한 운동 지도가 의사법에서 금지하는 의료행위에 해당되는 범위가 불투명함
 - 인정 내용 : 의사의 진단서를 바탕으로 한 지도는 의료행위에 해당되지 않아 합법이라고 해석할 수 있음

③ 혈액검사 (건강라이프컴퍼스)

- 확인 내용 : 약국 등 병원 외의 장소에서 혈액검사를 하는 것이 의사법에 저촉되는지 여부
- 인정 내용 : 진료를 받는 본인이 채혈하고 검사과정에서 안전을 충족시키면 합법으로 인정

□ 시사점

- 일본정부는 성장전략을 수립하고 산업의 신진대사를 촉진시키기 위해 ‘그레이 존 해소제도’, ‘기업실증특례제도’를 도입한 산업경쟁력강화법을 시행
 - 동 제도는 사업 실패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해 줌으로써 창업에 소극적이었던 기업의 창업과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 도입한 제도
 - 일본정부는 동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신시장을 개척할 수 있고 경제성장으로 연결시킬 수 있다는 기대감을 보이고 있으므로 우리도 이를 참고할 필요
- 규제 완화가 촉진되고 새로운 산업이 발전하게 되면 우리 벤처기업들의 일본진출 기회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
- 창업을 촉진하고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이나 의료제도 분야의 대폭적인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

<참고자료>

닛케이신문(2014.2.5, 2013.11.5), 경제산업성 보도자료(2014.1.20)